

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3. 2.
총무재무 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5. 3. 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 기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1994. 3. 16. 법률 제4741호) 동법 제109조제2항에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모자복지법령등에 근거하여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며,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통합공과금운영제도의 폐지로 공과금요원의 임용자격

란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동장에 한하여 임기만료일까지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토록 함(안 제2조 제2항)
- 부녀상담원 및 가정상담원을 부녀복지상담원 및 가정복지상담원으로 하고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25세이상 55세미만에서 25세이상 40세미만으로 함(안 제4조제4항, 별표1, 제2호)
-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중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를 신설(별표1, 제2호)
-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의 부녀·가정복지상담원 임용자격요건 강화(별표1, 제2호)
- 불합리한 자격기준 및 부녀복지상담원 9급상당 임용자격 삭제(안 별표1, 제2호)
 - 부녀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중 교사 자격자 삭제
 - 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중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 삭제
- 통합공과금운영제도의 폐지로 공과금요원 임용자격란 삭제(안 별표 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일 또는 퇴임일까지는 서울특별시마포구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부녀 및 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25세이상 55세미만에서 25세이상 40세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예외로 하고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 중 불필요한 현행 자격요건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를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 경력자로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특히 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은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경력에 있는 자로 임용자격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통합공과금 요원란은 업무 이관으로 인한 통합공과금 운영체도가 폐지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재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전문직종사자의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복지행정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재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상담원 임용자격의 기준이 보사부예규 제600호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한 동 조례개정준칙안과는 임용자격 요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준칙안대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사부예규가 상위법규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규칙에 속한 사항으로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1
----------	-----

제출일시: 1995. 2. 18.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1994. 3. 16. 법률 제 4741호) 동법 제109조제2항에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모자복지법령등에 근거하여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며,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중소지자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통합공과금운영체도의 폐지로 공과금요원의 임용자격란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109조제2항에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동장에 한하여 임기만료일까지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토록 함.(안 제2조 제2항)

- 부녀상담원 및 가정상담원을 부녀복지상담원 및 가정복지상담원으로 하고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25세이상 55세미만에서 25세이상 40세미만으로 함.(안 제4조 제4항, 별표1, 제2호)
-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를 신설(별표 1, 제2호)
-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의 부녀·가정복지상담원 임용자격요건 강화(별표1, 제2호)
- 불합리한 자격기준 및 부녀복지상담원 9급상당 임용자격 삭제(안 별표1, 제2호)
 - 부녀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중 교사자격자 삭제
 - 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중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 삭제
- 통합공과금운영제도의 폐지로 공과금요원 임용자격란 삭제(안 별표 제5호)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12.20. 법률 제4789호) 제15조, 제109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1993.12.27. 법률 제4613호)제2조 제3항제2호, 제4항
- 사회복지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1호)제8조
- 사회복지사회복지시행령(1994.3.2. 대통령령 제14183호)제11조
- 모자복지법(1989.4.1. 법률 제4121호)제8조
- 모자복지법시행령(1989.12.13. 대통령령 제12851호)제12조
-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1991.9.9. 보사부예규 제600호)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동장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1994년 3월 16일에 공포한 법률 제4741호의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퇴임일까지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다만,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경우는 25세이상 55세 미만으로 한다”를 “다만,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경우는 25세이상 40세 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조중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를 “서울특별시마포구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내에서”로 한다.

제9조 본문중 “임용권자”를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임용권자”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임용권자”를 “구청장”이

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를 “단위기관내에”로 한다.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의 “제3호 내지 제9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2호 “부녀, 청소년아동복지분야” 중 “복지상담원”란 및 “가정상담원”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5호 “행정관리분야” 중 “공과금요원”란을 삭제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부녀·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상담원 및 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부녀복지상담원 및 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본다.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부녀복지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 부녀상담 처리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2년이상인 여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3. 일반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여자	1991.9.9 보건사회부 예규 제600호
	7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인 여자 2.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3. 일반상담원(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여자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8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여자 2.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가정복지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상담 업무총괄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12년이상인 자 2. 일반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여자 	
	7급상당 (일반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제 연구조사 · 가정문제 상담 · 가족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인 자 2. 일반상담원(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여자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8급상당 (일반 상담원)	·가정문제 연구조사 ·가정문제 상담 ·가족치료	1. 전문대학이상의 사회사업학 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 과를 졸업한 자로서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 증 소지자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 년이상인 자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동장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1994년3월16일에 공포한 법률 제471호의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퇴임일 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u>구청장</u> 이 임용한다. ② (생략)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u>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u>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4조(임용자격) ①~③ (생략)</p> <p>④ <u>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가정)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한다.</u></p>	<p>제4조(임용자격)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만,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경우는 25세이상 40세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전보) <u>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6조(전보) <u>서울특별시마포구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내에서</u></p>
<p>제9조(직권면직) <u>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u></p> <p>1~3. (생략)</p> <p>4. 기타 <u>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p>	<p>제9조(직권면직) <u>구청장은</u></p> <p>1~3. (현행과 같음)</p> <p>4. <u>구청장이</u></p>
<p>제10조(휴직) <u>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p> <p>1~2. (생략)</p>	<p>제10조(휴직) <u>구청장은</u></p> <p>1~2.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병역의무휴직자의 결원보충)</p> <p>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u></p>	<p>제11조(병역의무휴직자의 결원보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단위기관내에</u></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1. (생략)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구청가정 복지과장	(생 략)			
부 녀 상 담 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부녀상담 처리 -부녀상담 원의 업무 지도감독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4년이상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4년이상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정규 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 4. 부녀상담원(7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사부 예규제 ('67. 7.24)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1. (생략)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구청가정 복지과장	(현행과 같음)			
부 녀 상 담 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부녀상담 처리 -부녀상담 원의 업무 지도감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12년이상인 여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3. 일반상담원(7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여자	1991. 9. 9. 보사부 예규제 600호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7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가출 부녀자의 선도보호 -문제가정 의 상담	1. 4년제대학의 사회사 업학과 졸업자 2. 국민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교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3. 부녀상담원(8급상당) 으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모자가정 의 보호 와 모자 복지상담 -기타선도 보호사업 목적달성 을 위하 여 필요 한 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인 여자 2.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 자 3. 일반상담원(8급상당) 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여자	
	8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사회사업학 을 전공하였거나 정 규대학 과정을 이수 한 자					8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현행					개정안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가출 부녀자의 선도보호 -문제가정 의 상담	2. 국민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3. 부녀상담원(9급상당) 으로 2년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자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모자가정 의 보호 와 모자 복지상담 -기타선도 보호사업 목적달성 을 위하 여 필요 한 업무	2.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 자	
	9급상당 (일반 상담원)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가출 부녀자의 선도보호 -문제가정 의 상담	1. 사회사업에 관한 행 정에 1년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사업 종사자 자 격증을 소지한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교사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삭 제)				

현행					개정안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가정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가정상담 업무의 개발연구 -가정상담 원의업무 지도감독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또는 법률학과 졸업한 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예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졸업자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예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상담원(7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복지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가정상담 업무총괄 -일반상담 원에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자격중 소지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12년이상인 자 2. 일반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여자	
	7급상당 (일반 상담원)	-가정문제 연구조사 -가정문제 상담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또는 법률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예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상당 (일반 상담원)	-가정문제 연구조사 -가정문제 상담 -가족치료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현					개 정 안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상담원(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인 자 2. 일반상담원(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여자	
	8급상당 (일반 상담원)	-가정문제 연구조사 -가정문제 상담	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또는 법률학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급상당 (일반 상담원)	-가정문제 연구조사 -가정문제 상담 -가족치료	1. 전문대학이상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아동복지 지도원 (청소년 지도)	(생 략)				아동복지 지도원 (청소년 지도)	(현행과 같음)			
훈련교사	(생 략)				훈련교사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5. (생략)					3~4. (현행 4~5와 같음)				
6. 행정관리분야					5. 행정관리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지도사	(생략)				지도사	(현행과 같음)			
공과금 요금	8급상당	-공과금 자료의 정리보존 -공과금 업무분석	1.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로서 6월이상 전산 교육을 이수하고 공 과금 업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자 2. 9급(상당)이상 공무 원으로서 공과금 업 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삭 제)	
	9급상당	-공과금 자료의 정리보존 -공과금 업무분석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자로서 2월이상 전 산교육의 이수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6월이상인 자						
7~9. (생략)					6~8. (현행 7~9와 같음)				